

투자설명서 변경대비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 일부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효력발생 예정일:** 2025년 3월 14일(금)

□ **대상 펀드**

- 1) AB 글로벌 고수익 증권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 2) AB 글로벌 로우볼 증권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 3) AB 미국 그로스 증권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 4) AB 미국 그로스 UH 증권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 **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문구 정정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요약정보			
투자비용	정기결산에 따른 갱신		자료 업데이트
- 투자실적추이 - 운용전문인력	정기결산에 따른 갱신		자료 업데이트
- 투자자 유의사항 - 주요투자위험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문구 정정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정기결산에 따른 갱신		자료 업데이트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문구 정정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위험등급 분류기준 개편안(97.5% VaR) 반영	<u>변동성</u>	<u>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97.5% VaR 모형 사용))</u>

적합한 투자자 유형		<p>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과거 <u>수익률의 변동폭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률의 변동폭이 클수록 미래의 수익률을 예측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이는 투자의 위험이 높아짐을 의미합니다.</u></p>	삭제
		<p><u>변동성 기준 위험등급분류표: 표준편차</u></p>	<p><u>시장위험등급 기준표: 97.5% VaR 모형</u></p>
		<p>주 1) 실제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년(156 주)간 펀드(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해당 운용펀드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정)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와 등급 기준표상의 표준편차 상한치를 비교합니다.</p>	<p>주1) 실제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합니다.</p>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3) 환매수수료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른 정정		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에 관한 사항 관련 표 추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정기결산에 따른 갱신		자료 업데이트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펀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법 개정사항 반영	<p>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p> <p>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X 환급비율*</p> <p>* 환급비율: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p> <p>단, 환급비율이 >1 이면 1, 환급비율이 <0 이면 0으로 함</p>	<p>외국납부세액 발생 시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외국납부세액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판매사 등)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소득 지급 시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이자·배당소득)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p>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연간 <u>400만원</u> 이내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연간 <u>600만원</u> 이내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p>나. 과세 (4)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관한 과세 (연금계좌 과세 주요 사항)</p>		<p>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연간 <u>700만원</u>을 한도로 함)의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단, 종합소득금액 <u>4,000만원</u>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 적용</p>	<p>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연간 <u>900만원</u>을 한도로 함)의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단, 종합소득금액 <u>4,500만원</u>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 적용</p> <p>(분리과세 한도) - 1,5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시 제외) - 연금소득이 1,500만원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함. (분리과세 선택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 부터 적용)</p>
---	--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p>1. 재무정보</p>	<p>정기결산에 따른 갱신</p>		<p>자료 업데이트</p>
<p>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p>	<p>정기결산에 따른 갱신</p>		<p>자료 업데이트</p>
<p>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 연평균 수익률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p>	<p>정기결산에 따른 갱신</p>		<p>자료 업데이트</p>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p>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p>	<p>정기결산에 따른 갱신</p>		<p>자료 업데이트</p>
<p>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p>	<p>정기결산에 따른 갱신</p>		<p>자료 업데이트</p>